



평택 청북지구 보광 그랑베르 공급공고(안)

■ 평택 청북지구 보광 그랑베르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며 대규모 택지지구에 건설되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에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은 관계법령에 기준으로 공급되오니 청약신청자는 착오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평택 청북지구 보광 그랑베르 아파트는 거주지역별, 자격별 청약점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임차인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한사항 및 유의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평택시 건축과 - 25298 임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택지개발지구 3블록

■ 대지면적 : 23,699㎡

■ 공급규모 : 지하1층 - 지상15층 ~ 지상 20층 아파트 6개동 400세대 및 기타 부대 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천원)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별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 지분	공급 세대	층 별	임대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시)	월 임대료
	평택시	수도권			공급면적			세대별 기타공 용면적	계					1회	2회	1차	2차	3차	4차		
					전용	주거공용	소계														
공공 임대 주택	81903 -01	81904 -01	20080007 30(01)	107.4579	84.8530	22.6049	107.4579	34.3642	141.8221	57.4208	96	전층	133,930	13,393	13,393	13,393	13,393	13,393	13,393	53,572	285
	81903 -02	81904 -02	20080007 30(02)	108.5589	84.5926	23.9663	108.5589	34.2587	142.8176	57.2446	152	전층	135,390	13,539	13,539	13,539	13,539	13,539	13,539	54,156	298
	81903 -03	81904 -03	20080007 30(03)	109.3891	84.7832	24.6059	109.3891	34.3359	143.725	57.3735	152	전층	136,240	13,624	13,624	13,624	13,624	13,624	13,624	54,496	298

- 상기 주택형별 공급조건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의 따라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등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면적이 포함되어있으며 각주택형별 공히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총 · 호수를 사용하였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는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 받을 수 있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 공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하여 수납하여야 함. (단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수납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임대차 기간 10년간의 임대료를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와 함께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분양가에서 납부한 금액을 할인하여 적용함. (단, 잔금을 일시불로 납부한 후 분양전환을 받지 않을시 선납할인은 없으며 임차기간 동안의 월임대료를 일괄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 임대기간 및 조건변경

- 임대기간 : 10년
- 임대조건의 변경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차임 등 증액 청구의 기준의 의거, 최초 입주세대 입주지정 기간을 기준으로 월임대료는 매년 5%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10년후 분양전환조건

주택형별(㎡)	층별	분양전환금액	비고
107.4579	기준층	204,500,000	기준층 기준
108.5589	기준층	206,800,000	"
109.3891	기준층	208,000,000	"

-분양전환 금액은 당사에서 현재 분양가상한제주택의 공급금액을 참조하여 최소이율로 조정한 금액이며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의 1에 의거한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과 상기 분양전환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함.

-분양 전환시 당해 주택에 대한 수선, 보수 등의 범위는 외부도장에 한함.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10년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 2008. 9. 2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특별공급일정

면적구분 (전용면적)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시간	추첨 및 당첨자발표
전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경기도,서울시,인천시	2008.9.7	당사 분양사무소 / 10:00~14:00	2008. 9.7 당사 분양사무소 / 15:00

▶특별공급세대수

구분	거주자별	107,4579	108,5589	109,3891	계
특별공급(국가유공자등)	경기도	5	8	8	21
	서울시	4	6	6	16
	인천시	1	2	2	5
3자녀우주택세대주 특별공급	경기도	2	3	3	8
	서울시	2	2	2	6
	인천시	1	1	1	3
신혼부부보금자리주택특별공급	경기도	15	23	23	61
	서울시	12	19	19	50
	인천시	3	5	5	13

- 주택형태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태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태별 3자녀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50%는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 40%, 인천광역시 거주자 10%에게 각각 공급함

1)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 2호에 해당하는 자(우주택세대주)- 상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단체 기관장의 추천 또는 인증을 받은 자 -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청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구비서류①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주택(세대원 포함)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기타우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②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초본1통(주소이전,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③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및 인정서(장애인의 경우"장애인 인정증명서": 장애인인정증명서는 거주지관할 구청에서 발급 가능) ④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신청서(모바일하우스 비치) ⑤인감도장 ⑥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2) 3자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09.2) 현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우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수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청약예금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청금지 적용되는 제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해당청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구분	구비사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정기준표 (접수장소에 비치, 우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9. 2) 현재 우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우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우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①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기 바람.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구비서류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2005. 7. 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자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으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추후 부적격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우선순위배정표 상의 차순위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3자녀 특별공급시 동점자 처리 : 우선순위 배정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이 많은자 순으로 공급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아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자격이 다르거나 우주택기간 상이 및 우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3자녀 특별공급 배정표

배 점 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기 준	점 수	해당사항	비 고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2자녀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인 자
1자녀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 (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3)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9. 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로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재혼인 경우 출산자녀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 2,572,802원이하 (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3,675,431원이하)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해당형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이상인 세대는 4인가구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7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여야 함.[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 ②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지역요건 기준은 규칙 제4조, 제10조 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처리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 입주자 선정방법

①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주택공급신청자 중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도권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인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2항의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자격인증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9. 2)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청약통장가입확인서(청약통장가입 해당은행에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통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기 바람
제3자 대리신청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소득증제 구비서류

해당자격		소득증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직인날인) 혹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첨부)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근로자,일용직근로자		*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 조서 (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접수장소

-상기 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 9. 2)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증제서류 포함)의 소득증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20세이상 세대원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2. 일반공급

1) 공통사항

본 주택은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평택시에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7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2007.09.1 이후 평택시 전 입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분류됨)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9. 2)현재 평택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평택시 일반공급, 수도권 일반공급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평택시 일반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수도권 일반공급에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중복청약시 발표일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하며,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 계약 체결 재사용이 불가능함

-평택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함

-평택시 주택건설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평택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평택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수도권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동일 순위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평택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우선되며, 수도권지역 거주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1순위 주택당첨자중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2)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연적구분	청약관련예금	접수일자	접수장소및시간	추첨및당첨자발표			
특별공급			위 특별공급신청자격 구비자	2008. 9. 7	당사 견본주택 (10:00 - 14:00)	발표일시 2008.9.7 15:00 발표장소:당사견본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1순위	전주택형	- 청약자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단, 90 04 .28. 이전 가입자는 12회 이상 납입한 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자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 청약가능)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평택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008.9.8	■인터넷 *국민은행 www.kbstar.com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www.apl2you.com	■발표일시 : 2008년9월16일 14:00 ■장소:당사 견본주택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24회 미만 납입한 분. (단 90. 04.08. 이전에 가입자는 3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한 분)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2008.9.9	■시간 08:30~18:0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분					2008. 9.10	■우리은행 본,지점 09:30-16:30

*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가능(창구 접수기간 : 09 : 30 ~ 16:30)

■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안내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자축을 가입하시는 분	국민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자축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공통 - 1, 2순위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인터넷 - 청약자축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폰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청약자축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l2you.com접속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과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에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임차인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 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전용 면적이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가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⑦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세대주 인정기간의 산정에 대한 유의사항

1.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2.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신청접수 방법

- 층별, 동별, 향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 거주지역 구분별로 평택시(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는 접수하지 않음.(평택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으로 청약 가능)
- 청약순위로 일반공급 세대주의 30%를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70%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각각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에서 평택시 거주자 신청접수결과 미달 세대수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거주지역별로 배분하여 차순위에 게 공급함.

■ 공급신청 시 구비사항(창구 청약자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 : 우리은행 본·지점) ■청약저축 통장(1·2순위자에 한함)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 서류 추가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호적등본 제출)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100만원
제3자 대리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음. 그러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 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2.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점 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3. 기존에 청약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청약자격 전산등록하신 분도 은행에서는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청약자격을 검증하지 않으며,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음.

■ 3순위 청약신청금

주택형태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주택형	100만원	가능한 한 수도권 지역 소재 금융기관에서 발생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1.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8. 09. 17) 이후 (평일 09:30 ~ 16:30)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우리은행 본·지점
3.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 신분증, 공급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의 환불시에 한함)
4.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및 위임장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제3자의 주민등록증

5. 3순위 청약 신청금의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6. 3순위 당첨자에 대한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나 청약 접수한 우리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되신 분 중 연락처 표기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 기재된 연락처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번으로 넘겨 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건본주택에서 각 주택형별 신청자의 입회하여 공개추첨에 의해 임차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동/호수를 결정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임차인을 모집함.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 (1, 2순위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회수가 많은 자 ⑤ 부양 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결제원 컴퓨터 추첨에 의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각 순위별로 임차인을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각 순위별 평택시 거주자 추첨 후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에 포함하여 임차인을 선정함. ■각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 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당사 건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인터넷·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 안내

구분		국민은행	금융결제원
이용대상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www.ap2you.com) → 청약센터 →당첨자조회
	이용기간	2008. 09. 16. ~ 2008. 09. 25.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방법	국민은행 주택 청약 시 휴대폰 번호로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이용시간	2008. 9. 16. (09:0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1. 계약기간(정당계약자) : 2008. 09. 22.(월) ~2008. 09. 24.(수) [3일간] 10:00 ~ 16:30

2.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건본주택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001-351970	(주)보광종합건설외 1인

3.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당사건본주택에서 직접 납부하여야함(무통장 입금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요망)

4.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임대보증을 받을 수 없음.

* 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 모바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제출생략)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세대주, 20세이상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초본 1통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배우자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상기 제출서류는 계약일 기준 3일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5. 0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등

1.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상이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은 불가함.

2.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은 불가함.

-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까지의 기간(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유지 대상기간)중에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된 경우

- 1, 2, 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상기 기준에 의거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3. 청약접수일자과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4.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5.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6.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7. 계약 체결전 사업지 방문을 통해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주변 고층건물 등의 건설 및 주변시설, 혐오시설,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계약 체결후 그 침해로 인한 손해 및 현상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8.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면적정산으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 변동에 대한 차후 정산금액은 없음.
- 9. 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임차권을 전대 또는 양도,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당첨 무효, 해약 및 퇴거 조치함.
- 10. 임차인으로 선정(3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11.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함.
- 12. 임대주택은 임대차 기간동안 전매(매매, 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상속인 경우 제외) 및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됨.
- 13.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당첨자)간의 임대차 계약서 체결조건을 준용함.
- 1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간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15.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입주예정자에 대한 응자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응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한다.(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 본 아파트는 당첨된 해당 동호수 분양대금 중 계약금(총 분양금액의 20%) 납입 후 총 분양금액의 40% 대출이 가능하나,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공고)

주택형태	택지비	건축비	계
107.4579	22,519,806	126,294,142	148,813,948
108.5589	22,450,702	127,987,466	150,438,168
109.3891	22,501,256	128,882,645	151,383,901

본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후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가와 당사에서 제시한 확정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 입주자 사전점검

- 입주예정자의 사전 점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개시 전에 사업주체의 통보일정에 따라 실시함.

■ 입주예정일 : 2010년 11월(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유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며,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평형환산방법 = 평형면적(㎡) × 0.3025}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됨.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됨.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 여건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 하는 경우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팜플렛 등 각종인쇄물 및 조감도는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불허함.
- 단지명칭 및 동 표시, 외부색채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어린이 놀이터 기구는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신청차격, 임차인 선정방법 및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규에 따름.
- 본 아파트는 입주시 임대주택법 제17조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게 되면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인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관계 법령의 변경 시 그에 따름)하게 되며, 임차인은 매월 임대료에 임대보증금 임대수수료에 포함되어 납부하여야 함.(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의6)
- 본 아파트는 임대주택법 제 16조 ②항,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②항1호에 의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의 필요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카달로그, 전단 등 광고물에 개재된 평면도(CG, 아이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의 가구 등을 배치하고 기본품목, 발코니 확장형 시설물을 별도 구분 없이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반드시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시가스과 관련하여 인·허가 협의조건에 따라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동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전원의 향과 조망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면적 및 면적 확정에 따른 정산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함.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명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콘크리트 난간높이는 층수 및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일선시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및 제반경비는 계약자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함.
- 청북택지지구내 고등학교설립은 학교신설 교부금 미배정 및 경기도 학교용지 매입비 미 전입에 따른 교육재정의 악화로 입주시기에 맞춘 학교설립이 불가능함, 다만 2008년4월 현재 중앙부처에서 학교용지 매입비 시,도 분담금과 관련하여 의견을 조정 중에 있는바 동 택지에 마련된 학교용지는 향후 중앙부처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학교설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청북지구내 초,중학교의 학교설립은 2008년도 학교설립예산 교부대상에서 제외되어 2010년 개교가 불가능함. 다만 2009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에 청북지구 학교설립예산이 확보 될 경우에는 2011년 3월까지 개교 가능할 것이나 개교시점보다 입주시점(2010년2학기 중)이 먼저일 경우 통학구역 및 학구(군) 조정을 통해 인근의 기존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 임
- 청북택지지구내 초,중학교의 학교설립이전에 인근 기존학교를 이용할 경우 도보로 등, 하교하기가 곤란한 거리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학교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구내 공동주택 사업시행자협의회 부담의 통학버스를 초,중학교 개교이전까지 임대 운영할 것임.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22008-102-0000500호	33,254,976,000	임차인도입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대상

1.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대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2.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의 납부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 채무자가 주택임대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 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12. 주 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② 보증회사는 제8조의 의거 임대이행으로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 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 보증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임대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	(주)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757,360,086	부가가치세 별도
전기	(주)동원엔지니어링	269,288,311	“
통신,소방	(주)건일엠이씨	50,000,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위치	공사내용	금 액
107.4579	주방	강화마루, 주방가구길이증가, 아일랜드가구, 하부장, 외부샤시	2,795,000
	거실	아트월,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발코니측 도어	3,063,000
	침실1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화장대	1,629,000
	침실2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862,000
	침실3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불박이장	1,905,000
	현관	낮은장, 바닥타일	400,000
	대피공간	그릴형 외부샤시	340,000
	소 계		10,994,000
108.5589	주방	강화마루, 주방가구길이증가, 아일랜드가구	1,794,000
	거실	아트월,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발코니측도어	3,265,000
	침실1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화장대	2,305,000
	침실2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777,000
	침실3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가구도어, 시스템선반	1,938,000
	현관	바닥타일, 도배, 외부샤시, 가구도어, 시스템선반	2,608,000
	대피공간	그릴형 외부샤시	340,000
	소 계		13,027,000
109.3891	주방	강화마루, 주방가구길이증가, 냉장고상부장	2,383,000
	거실	아트월,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3,162,000
	침실1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화장대	1,426,000
	침실2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불박이장	1,938,000
	침실3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845,000
	현관	낮은장(은경포함), 바닥타일	800,000
		소 계	

■ 확장시 별도계약품목

품 목	107.4579형	108.5589형	109.3891형	비 고
거실, 주방 폴리싱타일	1,450,000	1,600,000	1,500,000	
안방 불박이장	2,400,000	2,880,000	2,760,000	

* 입주자가 확장공사 및 별도계약품목 등을 선택하고 분양전환을 받지 않을시는 주택공급자가 정한 감가상각(10년 정액법 적용)을 적용한 금액만 환불조치하며 계약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시행사 및 시공사 : 주식회사 보광종합건설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 인천-주택2001-0030)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498-14번지

■ 견본주택 사이버 모델하우스 : <http://www.bokwanconst.co.kr>

■ 분양문의 : 1588-0771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